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2088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미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홍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1. 4.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5,111,1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11,1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유한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11931호로 양수금 131,800,370원 및 위 돈 중 35,407,9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31.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12.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27. C 유한회사로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9. 7. 30.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0. 4. 13. 기준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138,847,303원이다.라. B와 피고의 아버지인 D는 2017. 9. 20. 사망하였고, D의 배우자 E과 자녀들인 B, F, 피고는 2018. 1.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8. 1. 11.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가 사망할 당시인 2017. 9.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100만 원이었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G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이후인 2018. 2. 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2. 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000만 원이었다.

사. B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1) 피고는, 피고가 B의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B를 대신하여 채권자들에게 3,960만 원을 변제하여 B의 채무를 소멸시켰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 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2)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B가 피고의 누나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각자 독립적인 경제활동 내지 생활관계를 영위하고 있어 B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재산상태에 대하여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분할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된 B의 상속지분은 2/9이며, D의 사망 당시 위 상속지분이 가액은 33,555,555원(151,000,000원× 2/9, 원 미만 버림)인데, 위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000만 원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8,888,888원(4,000만 원× 2/9,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이전된 B의 상속지분이 실질적 가치는 24,666,667원(33,555,555원-8,888,888원)이 된다.

③ 피고는 B를 대신하여 2018. 2. 9. I에게 1,200만 원, J에게 1,300만 원, K에게 300만 원, L에게 300만 원, M에게 500만 원, N에게 100만 원, O에게 150만 원, P에게 110만 원 합계 3,96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B의 상속지분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대가를 지불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통하여 B의 채무가 정리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D와 E이 생활하고 있었고, D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배우자인 E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B의 상속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E이 거주지를 잃게 되는 것보다는 B의 상속지분을 피고가 취득하는 대신 B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B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졌다면, B의 상속지분의 가액을 초과하여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경호

목록(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4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595.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3.1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59510분의 3754

